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74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이종욱 · 안철수 · 김승수
이종배 · 송언석 · 조승환
최은석 · 추경호 · 박덕흠
김상훈 · 박대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도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법률 제20957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도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서 신설〉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인
구감소지역으로 정할 수 있
다.

[illegible]

13. ~ 18. (생략)	<u>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u> <u>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u> <u>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u> <u>할 수 있다.</u> 13. ~ 18. (현행과 같음)
----------------	--